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104 발의연월일: 2024. 12. 30.

발 의 자: 강선우 · 임오경 · 박해철

김성회 · 김윤덕 · 서미화

김교흥 · 정태호 · 추미애

임호선 · 전현희 · 안규백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려는 경우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 도록 하고 있으며,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 국무회의 심의 를 거쳐 계엄을 해제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계엄을 선포한 경우 국회 에 통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니 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계엄의 선포는 국민의 기본권에 제한을 가하는 중대한 조치이므로 계엄 선포가 신중히 결정되도록 국무회의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도 국무회의 심의로 인하여 계엄의 해제가 지연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국회 통고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의 계엄 선포 효력을 명

확히 규정하고, 국회의원이 계엄 해제 요구를 위한 국회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의 활동에 관한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려는 경우 국무회의에서 계엄 선포를 의결하도록 하고,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 국무회의 심의 전에 계엄의 효력이 즉시 정지되도록 하여 계엄권의 남용을 방지하려 는 것임.

또한 국회 통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계엄 선포의 효력이 없도록 하고 계엄사령관 등으로 하여금 국회의원이 계엄 해제 요구를 위한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게 함으로써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등).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 중 "심의를"을 "심의 · 의결을"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계엄 선포의 무효) 제4조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계엄 선포는 그 효력이 없다.

제11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 우에는 국무회의 심의 전에 계엄의 효력이 즉시 정지된다.

제13조의 제목 중 "불체포특권"을 "불체포특권 등"으로 하고, 같은 조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계엄사령관 및 행정기관은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한 경우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하기 위한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체포 또는 구금된 국회의원이 회의 및 표결에 참 석할 수 있도록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국회의 기능 보장 등) ① 계엄이 선포된 경우에도 국회의

기능과 국회의원의 활동은 보장되며, 누구든지 계엄이 선포된 이후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 및 회의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계엄이 선포된 경우 국회의장은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의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국회법」 제73조의2에 따른 원격영상 회의의 방식으로 본회의를 개의하고 표결할 수 있다.

제14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이나 회의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 ①	제2조(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 ①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	⑤
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	
회의의 <u>심의를</u> 거쳐야 한다.	<u>심의·의결을</u>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u><신 설></u>	제4조의2(계엄 선포의 무효) 제4
	조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
	한 계엄 선포는 그 효력이 없
	<u>다.</u>
제11조(계엄의 해제) ① (생 략)	제11조(계엄의 해제) ① (현행과
	같음)
② 대통령이 제1항에 따라 계	②
엄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국	
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단서 신설>	다만,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
	구한 경우에는 국무회의 심의
	전에 계엄의 효력이 즉시 정지
	<u>된다.</u>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국회의원의 <u>불체포특권</u>)	제13조(국회의원의 <u>불체포특권</u>
(생 략)	<u>등</u>) <u>①</u>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신 설>

<신 설>

제14조(벌칙) ① · ② (생 략)

<신 설>

같음)

② 계엄사령관 및 행정기관은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한 경우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회 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하기 위 한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체 포 또는 구금된 국회의원이 회 의 및 표결에 참석할 수 있도 록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제13조의2(국회의 기능 보장 등)
① 계엄이 선포된 경우에도 국회의 기능과 국회의원의 활동은 보장되며, 누구든지 계엄이 선포된 이후 국회의원의 국회출입 및 회의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계엄이 선포된 경우 국회의 장은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개 의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때 에는 「국회법」 제73조의2에 따른 원격영상회의의 방식으로 본회의를 개의하고 표결할 수 있다.

제14조(벌칙)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이나 회
	의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u>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u>
<u>③</u> · <u>④</u> (생 략)	<u>④·⑤</u> (현행 제3항 및 제4항
	과 같음)